

● 협력업체 선정 및 운영 실천사항

제 1 조 목적

본 실천사항은 세방전지(주)(이하 '당사'라 한다)가 협력회사 선정 및 운영 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와 자재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모두 포함한다.
2.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력업체 운영'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거래 기회의 부여 및 평가, 등록 취소 등 협력업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협력업체 선정(등록) 기준 및 준비

1. 다음의 경우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등록)을 위해 평가 주관팀을 설정,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가. 당사가 보유하지 않은 설비, 장비, 기계 및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
 - 나. 생산 코스트 절감을 도모하거나 기타 사내 제작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기존 부적합 업체를 대체하거나 등록업체 외 추가적으로 협력업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라. 협력사로부터 해당 자재, 설비, 장비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 마. 고객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할 경우

제 4 조 협력업체 등록 절차

1. 신규 등록 대상 협력업체는 협력업체 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당사 규정에서 정한 평가 점수별 등급 부여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차량용 원부자재 신규업체 등록 평가시 반드시 품질인증시스템(ISO9001 이상) 취득 및 효력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항목별 평가 결과 집계 후 75점(C등급) 이상 판정된 협력업체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신규 등록 대상 업체가 최초 평가에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 평가팀은 시정조치완료를 확인 후, 1개월 이내 재평가 일정을 수립해 평가를 실시한다.
5. 대상 협력사가 재평가에도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 당사 협력사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거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6. 평가 대상 협력업체에 평가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등록된 협력업체는 해당 등록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고객거래처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통지한다.
 - 등록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개설통장사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사본, 사용 인감계

제 5 조 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등록취소 기준

협력업체의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고 거래를 중단한다.

1. 부도 또는 폐업으로 경영이 중단되어 정상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2. 상도의를 위반하고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업체
3. 협력업체 정기평가 결과 2년간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업체
4. 협력업체 평가에서 D이하 등급을 받은 업체 중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업체
5. 당사에서 작업도중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으로 손해를 야기한 업체 (경중에 따른 조치)
6.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7.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8. 상기 내용 외 기타 사유로 협력업체 평가위원회에서 거래 중단 판정을 받은 업체

제 7 조 재등록 절차

거래중단 업체를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 부서장의 승인하에 거래재개 할 수 있다.

제 8 조 제재조치

당사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고 이의 기준은 당사의 내부규정 및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끝]